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 제1895호
- 나. 발 의 자 : 김경 의원 외 9명
- 다. 발의일자 : 2024년 5월 27일
- 라. 회부일자 : 2024년 5월 30일

2. 제안이유

-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이 중요해짐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해당 조례에도 이를 위한 내용을 추가함.

3. 주요내용

- 가. 제16조의2에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활성화를 위한 내용을 신설함(안 제16조의2).

4.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강옥심)

가. 개정안의 개요

- 동 개정안은 서울시 출연기관인 120다산콜재단이 ESG 경영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경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발의되었음.

- ESG 경영이란 환경(Environmental)·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 등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하는 경영을 의미하며,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 위험에 대응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투명한 지배 구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용어임.

이는 민간 부문 중심으로 등장한 개념이기는 하나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공공부문에서도 받아들여 미국, EU에서는 기업의 비재무정보에 대한 공시의무를 규정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

- 국내 또한 민간에서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주기적으로 ESG 경영 포럼을 개최하고, 대기업에서 ESG 경영 선언을 발표해 왔으며, 정부에서는 2023년 9월 ‘ESG 평가기관 가이드스’를 시행하여 ESG 평가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입법적인 노력으로 「국민연금법」은 투자 시 ESG 경영사항을 고려하도록 법제화하였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은 사업자의 환경적·사회적·윤리적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이 제정·시행 중임.

- 다만, 개별법에 산재되어 있는 ESG 경영 관련 규정을 통합하기 위하여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촉진법안」이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하여 통과되지 못한 바 있음.

- 한편,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노력으로 지난 3월 「서울특별시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제정·시행 중이며, 각종 포럼과 협약 등을 통해 ESG 경영 실천을 위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음.

또한 23개 산하기관(공기업 6, 출연기관 16, 자원봉사센터)을 대상으로 경영실적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ESG 경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ESG 평가지표를 일부 도입하여 운영 중임.

나. 개정안의 주요 내용

(1)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활성화 노력(안 제16조의2)

- 개정안은 120다산콜재단이 ESG 경영의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ESG 경영을 실천하고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 재단은 2023년부터 사업계획에 ESG 경영을 자체적으로 도입하여 10개의 전략과제 및 17개 세부지표를 작성하여 이행한 결과, 공공콜센터 및 서울시 출연기관 중 최초로 ‘대한민국ESG대상’을 수상한 바 있음.
 - 특히 상담사 재택근무 상시화 및 감정노동 특화 건강관리 지원 등 대부분의 직원이 감정노동자인 콜센터 업무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경력단절여성 및 중장년층 맞춤형 일자리 운영 등 고용부분에서도 사회적 책임 활동을 실천한 점을 높이 평가받은 것으로 나타남.

- 또한 2024년에는 대한민국사회공헌재단과의 협약을 통해 내용 연수가 경과되어 불용처리 예정인 PC를 ‘몽골 재활용 컴퓨터 도서관’에 기부하여 개발도상국의 정보격차 해소와 폐기물 감소에 기여한 바 있으며,

재단 내 동아리 활동을 통해 민간단체로부터 기증받은 수목과 야생화로 정원을 조성하여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시민과 직원이 공유할 수 있는 쉼 공간을 마련하는 등 자발적으로 ESG 경영을 실천해 오고 있음.

- 따라서 동 개정안은 그동안 운영상 자율에만 맡겼던 ESG 경영을 입법화함으로써 운영 기조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고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내용적 타당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임.

- 다만, 서울시의회는 지난 3월 서울시 산하 기관 및 관내 중소기업의 ESG 경영 도입과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서울특별시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의결하여 3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해당 조례는 제2조제2호나목에서 서울시 출연기관을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동 개정안의 의결 여부와 상관없이 120다산클레단은 ‘ESG 경영 활성화 이행 노력’을 의무로 부과받고 있는 상황임.

「서울특별시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나.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제7조(공공기관의 환경·사회·투명 경영 (ESG) 활성화 등) ① 공공기관은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직의 정비
2.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
3.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을 고려한 시책의 평가
4.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발간

② 시장은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하는 경우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활성화를 위한 평가지표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공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등을 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과 중점관리목표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최근 국회에서는, ESG 경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 개별법에 산재되어 있고, 관련 정책 또한 개별 부처에 혼재되어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일원화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한바¹⁾,

동 개정안이 기시행 중인 조례의 내용을 개별 조례에서 반복하여 규정하게 된다는 점에서는 다소 신중할 필요가 있어 보임.

전문위원

임창균(2180-8113)

입법조사관

심형준(2180-8116)

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검토보고서(2023-11) -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촉진법안(이원욱 의원 등 25인)

의안번호
1895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제 안 자	제안일자	소관 상임위	
	김 경	2024. 5. 27.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주요내용	<p><개정 필요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특별시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제정('24.3.26.)됨에 따라 공공기관(출자·출연기관 포함) 적용 대상이므로 120다산콜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에도 ESG활성화를 위한 내용을 신설하여 공공의 사회적 책임 활성화를 도모함 <p><주요 입법 요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례 내에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활성화를 위한 계획수립 추진 내용을 신설함(안 제16조의2 신설) 			
추진경과	<p><input type="checkbox"/>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 9. 29. 조례 제정 ○ '21. 9. 30. 타법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 			
부 서 검토의견	원안가결(○) / 수정가결 () / 부결() / 보류()			
쟁점사항 (의회동향, 문제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쟁점사항 없음 ※ 「서울특별시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3조(시장의 책무) 및 제7조(공공기관의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활성화 등)에 따라 공공기관도 적용 대상임 			
대응방안	○ 조례 개정 취지와 필요성에 동의함			
상 임 위 처리결과				
향후계획				
담당부서	민원담당관	팀장	장정호(☎2133-6462-) 담당	이미현(☎2133-6542)